

뢰가 관계몰입에 선행한다는 기준연구를 해운서비스 매매시장에서도 실증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다섯째, 지속적 관계유지 요인인 신뢰와 관계몰입 모두 해운서비스 매매시장에서 관계성과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특히 관계몰입보다는 신뢰가 관계성과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섯째, 해운서비스 매매시장에서 성과변수로 사용된 적재율 향상은 선행변수와 매개변수를 통한 만족할만한 적합도를 보임으로서 본 연구모형의 성과를 측정하기에 만족할만한 변수로 평가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 해운서비스 매매기업간 관계형성 영향요인은 거래적 특성요인, 관계적 특성요인이 주가 되어 신뢰 형성에 영향을 주며, 관계몰입보다 신뢰가 기업성과 즉 적재율 향상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모형은 해운서비스 매매시장에서 마케팅의 전략수단인 시스템적 차원의 접근모형으로 수용가능하고, 성과변수로 사용된 적재율 향상은 해운서비스공급기업의 관계성과를 측정하기에 만족할만한 변수로 평가되었다.

3. 경찰검문제도와 인권보장에 관한 연구

해사법학과 유상식
지도교수 한병호

경찰의 검문은 범죄인에게는 심리적인 제약으로 작용하여 범죄활동을 저지하거나 둔화시킴으로써 범죄예방의 실효를 거둘 수 있다. 또한 시민들로 하여금 범죄로부터의 불안을 해소시켜 사회의 치안유지 및 안정에 큰 기여를 함으로써, 공권력에 대한 신뢰감을 향상시키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처럼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검문은 국가공권력과 인권의 접점에 위치하여 양자간의 충돌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다.

범죄치안을 통한 사회공공의 안전과 질서유지가 경찰의 직무이지만, 자유민주주의국가에 있어서 개인의 존엄과 자유가 존중되고 법치행정이 확립되는 사회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국 민주권국가의 보편적 가치이자, 기대이고 요구이다.

이에 본 연구논문은 현행 경찰검문제도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를 중심으로 헌법상 명시된 인권보장의 이념과 원칙에 접근하는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제2장에서는 검문제도에 관한 이해를 돋도록 검문의 의의와 유형을 정리하고, 검문의 법적 근거와 법적 성격을 고찰한다. 그리고 국민의 인권과 관련하여 현행 검문제도의 기본이념을 정립하는 등, 현행 검문제도의 전반적인 내용을 개관하고, 검문에 관한 현법적 논의의 필요성을 도출하기 위해 현행 헌법에서 기본적 인권의 실체적, 절차적 보장의 기본원리와 접근방법, 그리고 한계를 고찰한다.

제3장에서는 대륙법계의 독일·프랑스, 영미법계의 영국·미국, 우리나라의 법제와 유사한 일본의 검문제도에 관한 검문의 내용, 관련된 법제 및 판례, 인권보장을 위한 장치 등을 고찰하여, 우리나라의 제도와 비교하여 그 시사점을 도출하여 현행 검문제도의 개선방향을 제시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제4장에서는 현행 검문제도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i) 구조적 측면, ii) 검문대상자를 중심으로 한 실체적 측면, iii) 검문과정의 절차적 측면, iv) 그리고 불법검문에 대한 구제적 측면에서 쟁점들을 체계적으로 분석·검토하여, 인권보장과의 관계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도출하고, 검문제도의 발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근거가 되도록 한다.

제5장에서는 제4장에서 분석·검토된 문제점을 바탕으로, i) 검문제도에서 인권보장의 헌법이념 수용과 검문제도의 적법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검문제도 개선의 목표를 설정하고, ii) 그 개선 방향으로 다양한 현행 검문제도의 일원화, 불법검문의 요인 배제, 인권보장의 제도적 보완을 제시한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현행 검문제도가 지니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현행 검문제도는 법적 근거가 다양하고, 용어가 정의되지 않아 검문의 범위와 한계가 모호하다. 둘째로 검문대상자를 범죄와 관련하여 의심이 가는 자를 경찰관의 개인적 판단으로 선정하는 것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 셋째로 소지품검사·검색은 통상 검문과 함께 이루어지고 있으나, 개별 수권법에 의해 명시된 경우가 아니면 불법으로 보아야 한다. 넷째로 검문에 있어 정지·질문의 정도와 한계가 법적으로 명확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고, 이로 인해 인권침해의 시비가 따른다. 다섯째 검문에 수반한 임의동행은 범죄 혐의가 명백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수사상 체포와의 관계에서 논란이 된다. 여섯째 피검문자의 인권보장을 위해 필요적 절차와 각종 고지제도를 두고 있으나,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피해의 실질적 구제제도가 미흡하다. 일곱째 무차별적 일제검문·자동차 및 선박검문은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적법성에 문제가 있다. 여덟째 불법검문으로 인한 피해 구제제도는 사후적 조치로 검문자체의 현장성, 피해구증의 곤란성 등 특수한 사정을 감안한 사전적 구제제도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문제점의 구체적 개선방안으로, i) 검문대상자 선정기준의 객관화, ii) 정지방법의 명확화, iii) 질문의 범위와 방법의 제한, iv) 소지품검사제도의 도입, v) 동행이유의 구체화, vi) 동행시간의 단축, vii) 자동차 및 선박검문의 법상 허용, viii) 무차별일제검문의 금지, ix) 부당한 동행요구에 대한 거부권의 보장, x) 변호인조력권의 실질적 보장, xi) 불리한 답변거부권의 보장 및 인권을 최대한 보장받을 수 있는 불법검문의 억제방안을 제시한다.